

Special

의료기관 수익사업 확대 관련 정책 방향



글·강민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I. 의료법인 제도 개요

1. 의료법인의 정의 및 도입목적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특별한 법인 형태이다. 국민을 위해 의료를 추구하고 배당이 허락되지 않으며 이익은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한 처분시 잔여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현재 법상으로는 주식에 의한 자금조달이나 이익배당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이윤의 상당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실제의 법인대표 등에게 환원되는 점에서 영리병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1991년)은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목적으로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들고 있다. 의료 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

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을 건립함으로써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2. 의료법인 현황

1976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한 의료법인 병원은 계속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61개(종합병원 85, 병원176)로써 병원 수로는 전체 968개(종합병원 288, 병원 680)의 27%를 점하고 있다. 이는 개인병원(종합병원 53, 병원 389)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이다. 1997년까지는 크게 증가하다가 1998년 다소 주춤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3. 의료법인 제도의 연혁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2월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1991년 8월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법령이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이 표준화되었다. 1994년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 중 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

2000년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의 법인설립 허가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서 이관하였으며 이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인설립허가 및 취소, 기본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 신고)를 받는 일 등이다.

가장 최근으로는 2002년 3월 30일 개정으로 원격진료 등 논란이 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부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만 관장하고 있다.

II.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부대사업 관련 법령 규정

현행 의료법령에서는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시행령제18조).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제한하여 목적사업인 의료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은 의료인 등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및 의료 등에 관한 조사연구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을 행함에 있어서도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 42조, 의료법시행령 제18조).

이는 의료행위 자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의료업까지 그 공공성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으로 보이며 과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시기에 의료 자원의 양적 확장 정책을 추구하던 시기에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특례법에서는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역특구에서 의료법인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법령에서는 의료법인이 노인복지시설, 건강식품 제조·수입·판매업, 사설 화장장 및 시설 납골시설, 장례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도 운영상 문제점

한편 현실에서는 많은 의료법인들이 경영난 극복 및 환자 등 관계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식당, 꽃가게, 편의점, 영안실, 주차장,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사업을 직영, 임대 또는 위탁 형식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 및 경영 투명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 재단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 운영에 있어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들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법인과는 달리 수익사업 수행에 있어 폭넓은 운영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들 비영리법인의 근거법은 의료법이 아니며 근거법령에서 고유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와 같이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명시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 일본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사례

일본 의료법인 제도의 원래 목적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법인화함으로써 자금의 집적성을 확보하여 의료의 영속성·계속성을 보증하는데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법인 병원에 있어서 출자사원의 임의사퇴에 의한 지분의 지불청구사안 및 출자사원의 사명에 의한 상속세 부담사안 등이 빈발하였다. 여기에 질병구조의 변화, 고령화의 진전에 의한 보건·복지의 구분이 모호해져 보다 공익성 높은 의료법인 유형을 신설할 필요가 대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자지분을 포기하여 지분을 없애고 등록에 의한 공적 운영을 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의료법인이 의료법상 특별의료법인으로 설정되었다.

특별의료법인의 업무는 본래업무, 부대업무, 부수업무, 수익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래 업무는 보건·의료·복지의 제공이며, 부대업무로는 본래업무 외에 지사의 승인하에 부대하여 행하는 노인보건시설운영 등의 업무를 말하며 부수업무는 수익업무에 관계없이 원내에서 행하는 부수적 업무로서 병원건물 내의 매점 운영이라든가 주차장이 이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은 지사의 승인 하에 행할 수 있는 12종류의 수익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병원 내에 온천시설이 있을 경우 온천욕장을 만들어 운영한다든가 병원 컨설팅업을 한다든가 보건의료관련 출판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 특별의료법인은 지역

의료의 주변 업무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새로운 자금원천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업무	보건, 의료 복지의 제공
부대업무	본래업무외의 지사 승인하에 부대하여 수행하는 업무 (예) 노인복지시설 운영
부수업무	수익업무에 관계없이 원내에서 행하는 부수적 업무 (예) 병원 건물내 매점, 주차장업
수익업무	지사 승인에 의한 12종류의 수익업무

【특별의료법인이 가능한 수익업무】

- ① 의료품 판매업, 의료용구 판매업, 기타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물품판매업
- ② 침구임대업, 린넨 대여업, 기타 물품판매
- ③ 음식점업
- ④ 배식서비스업, 의업경영상담업, 기타 청부업
- ⑤ 의료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 ⑥ 운송업(환자 운송에 한정)
- ⑦ 출판업(보건, 의료 관련)
- ⑧ 이용업
- ⑨ 미용업
- ⑩ 세탁업
- ⑪ 공중욕탕업
- ⑫ 해당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희자산을 활용한 주차장업

4.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정책 방향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허용 범위는 타 비영리법인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실과 법령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법령 규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현행 의료법상의 부대사업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어느 정도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의료법인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영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허용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로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화장장, 사설 납골시설, 장례식장업, 주차장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더불어 의료법인이 동 부대사업으로부터 창출한 수익은 의료업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다양화함으로써 병원 경영의 합리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병원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KHA**